

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4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추경을 통해 2,000백만원의 전입금 수입이 증가할 예정으로,
 나.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여행업계 재도약 사업비 지원 활용을 위해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 내역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(안)	증 감
계	2,002	4,002	2,000
전 입 금	2,000	4,000	2,000
이자수입	2	2	-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종 전	변 경(안)	증 감
계	2,002	4,002	2,000
비 용 자 성 사 업 비	1,900	3,900	2,000
긴급 생존자금 지원	1,500	3,500	2,000
안심 mice 모델구축	400	400	-
기 본 경 비	10	10	-
여 유 자 금 예 치 금	92	92	-

- 수입계획 변경 : 20억원 증가
 - 전입금 : (당초) 20억원 → (변경) 40억원

- 지출계획 변경 : 20억원 증가
 - 비용자성 사업비: (당초) 19억원 → (변경) 39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전출금 편성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제출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허나영 (☎ 2133-2812)